

표준 추가약정서 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추가약정서(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)

현 행	개 정(안)
<p><u>제4조 (증빙자료)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는 자금 용도 관련 증빙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</u></p>	<p><삭 제></p>
<p><u>제5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</u>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<u>3. 채무자가 제출한 자금 용도 관련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</u></p>	<p><u>제4조 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 ---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
<p><u>제6조 (여신거래 약정위반) (생 략)</u></p>	<p><u>제5조 (여신거래 약정위반) (현행과 같음)</u></p>